

충청북도 조례 입법평가 관련 자문위원 추천의 건

충북형 조례 입법평가는 의사입법담당관 시범평가로 수행 중이며, 차년도 평가 방법 정립 및 제도 확립을 위한 중간평가를 계획한 바, 이를 위한 자문위원을 위촉하고자 함.

○ 전문가 서면심의를 위한 자문위원 위촉

- 위촉 근거 :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칙 제2조

[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칙]

제2조(자문위원의 위촉)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고도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심사자문·지원이 필요하거나 위원회의 활동 및 주요시책에 대한 연구·자료수집 등이 필요한 때에는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문위원을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자문위원 위촉 요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의장은 위원회의 요청 등으로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. 다만,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 인원 또는 위촉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.

④ 자문위원을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. 다만, 위원장은 위촉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2년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

○ 위촉 대상 : 3명(교수 및 전문가) ※ 이력서 별도 첨부

성명	성별	주요 경력	구분
최철호	남	▪ (현) 청주대학교 법학과 교수 ▪ (현)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 ▪ (전)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	법제 분야
김진수	남	▪ (현)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▪ (전) 한국수자원공사 K-water연구원 선임연구원	건설·수자원 분야
김정숙	여	▪ (현)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▪ (전)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행정체제연구센터 소장	행정 분야

- 위촉 기간 : '24. 5. ~ '24. 12.(8개월)

- 위촉 절차 : 의회운영위원회 의결·추천 요청에 따라 의장 위촉

- 전문가 역할

- 조례 입법평가 분석지표에 따른 평가 및 입법평가서 검토(조례 30건)
- 충북형 조례 입법평가 제도 정립을 위한 자문

○ 향후계획

- 위촉장 전달 : '24. 4월말

- 자문위원(전문가) 서면심의 : '24. 5 ~ 7월